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규정

【전문제정 2011.4.18.】

제1조 (목적) 동명대학교 (이하 “대학교”라 한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대학교 소속 여학생의 체계적인 진로개발과 취업준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여대생 진로개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진로의식 함양과 진로탐색을 위한 여대생 특화 진로교과목의 운영
3. 진로상담 및 커리어코칭
4. 직업 기초능력 개발을 위한 강연회 및 세미나 개최
5. 여대생 취업 활성화를 위한 자료조사 및 분석
6. 여학생을 위한 기업체·관공서·연구기관·단체 등과의 연계 강화 및 활동
7.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조 (구성) ①센터에는 센터장 1인을 둔다.

②센터장은 센터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③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8.1.)

④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제4조 (운영위원회) ①센터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은 센터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위원 중에는 여성 교원을 1인 이상 포함한다.

④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대학교 교원 보직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센터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연구원) 센터의 원활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8조 (재정) 센터의 재정은 교비, 국고지원금, 기부금 및 기타 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 (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와 예·결산은 대학교의 회계절차에 따른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폐지한다.